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12월 22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12월 22일

3. 제안이유

- '96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재난관리기능, 인력보강,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 '96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 정원증원 : 30명 (본청 29명, 직속기관 1명)
- ▷ 재난관리기능 인력보강
 - 정원증원 : 1명 (증평출장소)
- ▷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
 - 정원감축 : 5명 (본청)
- ▷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
 - 1995. 12. 31. 25명 ⇒ 1996. 12. 31. 25명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재난관리 기능 인력보강,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있어

본청정원인 918명을 942명으로 24명 증원조정하고

직속기관 정원 960명을 961명으로 함과 아울러

출장소 정원 230명을 23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과

부칙조항의 한시정원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과 관련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본청정원에 있어서의 24명증원은 '96년도에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대상 29명이 증원되는 반면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에 따라 5명의 정원이 감축하게 됨에 기인하는 것이며
- 직속기관에 있어서의 1명증원 또한 '96년도에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이며
- 출장소에 있어서의 1명증원은 재난관리 기능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조항에 한시규정으로 되어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정원과 존치시한 개정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의 시한연장과 관련하여 동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즉시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